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6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7 명	2 명
재적임원	7 명	2 명
참석임원	7 명	1 명

1. 일 시: 2026년 4월 22일(수) 11:00

(회의소집 통보일: 2026년 4월 14일)

2. 장 소: 광운대학교 화도관 202-1호

3. 참석임원

- 이사(7명): 조선영 이사장, 이종수 이사, 이종민 이사, 배일환 이사, 이항철 이사, 류희근 이사, 조범구 이사 (불참: 없음)
- 감사(1명): 왕영호 감사 (불참: 신혜성 감사)

4. 안 건

-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 제2026-1호: 광운대학교 2025회계연도 고정자산 변동에 관한 건
- 제2026-2호: 청소년센터 등 위탁운영기관 운영 종료 및 재계약 미추진에 관한 건
- 제2026-3호: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수급 계획에 관한 건
- 제2026-4호: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제2026-5호: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건
- 제2026-6호: VISION 2034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건
- 제2026-7호: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제2026-8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제2026-9호: 법인 규정 제·개정에 관한 건
- 제2026-10호: 각급학교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건
- 제2026-11호: 광운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제2026-12호: 남대문중학교 교원 담당과목 변경에 관한 건
- 제2026-13호: 초·중등학교 주차면수 변경에 관한 건
- 제2026-14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차량 폐차 및 차량 기탁 승인에 관한 건
- 제2026-15호: 교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
- 기타안건: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건

간인			
----	--	--	--

5. 회의내용

(광운대학교 윤도영 총장,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 김문석 교무처장 입실함)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개회 시간이 되어 이세원 간사가 참석 임원(이사 7명, 감사 1명)을 보고하자, 조선영 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조선영 의장은 2025회계연도 법인 및 각급학교 결산과 감사결과 보고 안건은 대학교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및 결산 지연으로 금일 상정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동 안건은 2026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임시이사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심의하기로 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에 앞서 윤도영 총장에게 대학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자, 윤도영 총장은 전임교원 수급 계획, 특별채용 추진 방향 및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현황 등을 보고하다.

조선영 의장은 최근 대학 간 우수 교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광운대학교도 특별채용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처우 개선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또한 최근 10년 내지 15년간 타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 현황을 분석하여 인재 유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다.

이사들은 은퇴를 앞둔 석학, 우수한 지방대 교수, 젊은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군을 고려한 영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고, 특임교수 제도를 활용한 유연한 인재 확보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다.

(광운대학교 윤도영 총장 퇴실함)

□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조선영 의장은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전차 이사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보고사항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인			
----	---	---	---

□ 제2026-1호: 광운대학교 2025회계연도 고정자산 변동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1호 안건을 상정하고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한다.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은 2025회계연도 광운대학교 고정자산 변동 내역을 설명한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조범구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불임1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불임1: 광운대학교 2025회계연도 고정자산 변동(안)

□ 제2026-2호: 청소년센터 등 위탁운영기관 운영 종료 및 재계약 미추진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2호 안건을 상정하고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한다.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은 청소년센터 등 위탁운영기관 운영 종료 및 재계약 미추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한다.

왕영호 감사는 대학에 별도 위탁운영 기관이 있는지 질의하자,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은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로 창업지원센터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 차원의 운영과는 구분된다고 답변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류희근 이사의 동의와 배일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026-3호: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수급 계획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3호 안건을 상정하고 김문석 교무처장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하다.

김문석 교무처장은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수급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범구 이사는 대학의 전략 및 비전에 따라 인공지능, 피지컬 AI, 로봇 등 첨단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어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다. 이에 김문석 교무처장은 해당 분야의 인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별채용과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다.

조선영 의장은 해당 분야 우수 교원 확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업 대비 낮은 처우에 있다고 지적하며, 처우 개선 및 채용 절차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다.

간인			
----	---	---	---

아울러 조선영 의장은 전임교원 수급 계획과 후속 인사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2026년 8월 26일 예정이던 정기이사회를 2026년 8월 12일로 앞당겨 개최할 것을 제안하자, 참석 이사 전원 찬성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배일환 이사의 동의와 이향철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불임2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불임2: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수급 계획(안)

□ 제2026-4호: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4호 안건을 상정하고 김문석 교무처장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하다.

김문석 교무처장은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의원면직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최근 타 대학의 특별채용을 통한 우수 교원 스카우트가 활발하여 대학의 핵심 교원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다.

이향철 이사는 정년퇴임을 앞둔 우수 인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스카우트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하다.

조범구 이사는 AI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젊고 유능한 산업계 전문가를 강사, 겸임교수 또는 특임교수 형태로 초빙하여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과 현장 경험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학생과 전문가 간의 연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이종수 이사의 동의와 이종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의원면직 대상자

연번	소속	직종	직급	성명	임용사항	
					내용	일자
1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일반전임	부교수		명. 의원면직	2026. 2. 28.

간인			
----	---	---	---

□ 제2026-5호: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5호 안건을 상정하고 김문석 교무처장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하다.

김문석 교무처장은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이항철 이사의 동의와 배일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명예교수 추대

연번	성명	소속	심의결과		비고
			내용	추대일자	
1	김남영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명예교수 추대 가결	2026. 5. 1.	
2	이영수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추대 가결	2026. 5. 1.	

□ 제2026-6호: VISION 2034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6호 안건을 상정하고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하다.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은 VISION 2034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항철 이사는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5년 정도의 중기 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중간 점검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다.

왕영호 감사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간 계획에 반영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또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또는 2~3년 주기로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다.

조선영 의장은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한 1년 단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후에는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행계획의 추진 현황, 미이행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점검받을 것을 요청하다.

조선영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범구 이사의 동의와 배일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인			
----	---	---	---

□ 제2026-7호: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7호 안건을 상정하고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한다.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은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항철 이사는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중 제1조의 교육이념 및 목적 개정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창학정신과 교육이념 자료집(설립자 화도 조광운 선생 전기 연계)의 내용과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설립자께서 직접 남기신 교육이념의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해당 안건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왕영호 감사는 직제 규정 개정(안) 중 ‘예산조정팀’이라는 명칭이 예산 업무의 일부 기능만을 강조하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해당 명칭은 특정 업무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 ‘예산팀’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조범구 이사는 직제 규정 제55조의 ‘장애학생지원실’ 명칭과 관련하여,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명칭 변경 가능 여부와 유사 사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조선영 의장은 직제 규정 제55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부속기관장 및 부속교육기관장을 제4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하고 비전임교원도 보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대학의 주요 보직 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당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조범구 이사는 이사는 직제 규정의 “필요한 경우 비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는 문구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전임교원의 보직 임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승인 절차가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조선영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류희근 이사의 동의와 이종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한다.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중 제1조는 대학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붙임3과 같이 의결한다.
- 직제 규정 개정(안) 중 제14조의2 및 제55조 제3항·제4항은 붙임4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한다.
- 그 밖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한다.

간인			
----	---	---	---

▪ 광운대학교 규정 개정(안) 의결 결과

연번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부분가결*	2026. 4. 22.
2	직제 규정 개정(안)	수정의결**	2026. 4. 22.
3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6. 4. 22.
4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6. 4. 22.
5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6. 4. 22.
6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6. 4. 22.

※ 붙임3: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결과

※ 붙임4: 「직제 규정」 수정의결 조문대비표

(광운대학교 김재요 교무·행정부총장, 김문석 교무처장 퇴실함)

□ 제2026-8호: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8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이향철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붙임5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붙임5: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조선영 의장은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법인 규정 제·개정에 관한 건(임·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의 안건 추가 상정을 제의 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제2026-9호: 법인 규정 제·개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9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정(안), 임·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조범구 이사의 동의와 이향철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인			
----	---	---	---

▪ 법인 규정 제·개정(안) 의결 결과

연번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1	학교법인 광운학원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2026. 4. 22.
2	임·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6. 4. 22.
3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6. 4. 22.

□ 제2026-10호: 각급학교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10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광운중학교 및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의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왕영호 감사는 추가경정예산의 선집행 후보고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향후에는 사후 보고가 아닌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이종민 이사의 동의와 이종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원)

학교명	2025회계연도 경정예산액	2025회계연도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고
광운중학교	5,327,776,000	5,280,150,000	47,626,000	제2차 추경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11,617,863,000	11,616,028,000	1,835,000	제3차 추경

□ 제2026-11호: 광운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11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광운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개정안 중 '1차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조범구 이사의 동의와 류희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붙임6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광운중학교 규정 개정(안) 의결 결과

연번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1	광운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수정의결*	2026. 4. 22.

※ 붙임6: 「광운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수정의결 조문대비표

간인			
----	---	---	---

□ 제2026-12호: 남대문중학교 교원 담당과목 변경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12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남대문중학교 교원 담당과목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이종수 이사의 동의와 이항철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교원 담당과목 변경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당 초 과 목	변 경 과 목	비 고
남대문중학교	교사		수학	진로진학상담	

□ 제2026-13호: 초·중등학교 주차면수 변경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13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초·중등학교 주차면수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조범구 이사의 동의와 배일환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주차면수 변경내역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82면
- 광운초등학교: 52면

□ 제2026-14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차량 폐차 및 차량 기탁 승인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6-14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차량 폐차 및 차량 기탁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기탁 차량 또한 사용연수가 상당하므로 학생 안전성 확보 여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발전기금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본 안건을 승인할 것을 제안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조선영 의장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조범구 이사의 동의와 류희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폐차 대상: 차량번호 71구1323, 뉴에어로 43인승 버스
- 기탁 대상: 차량번호 74가0453, 뉴그랜버스 44인승 버스
- 승인조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발전기금 사용 승인을 조건으로 함.

간인			
----	---	---	---

□ 제2026-15호: 교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

□ 기타안건

조선영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안건 제2026-15호 및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사립 학교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비공개 처리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이사회 회의록 간인 대표자 : 조선영 이사장, 이향철 이사, 류희근 이사
(2025학년도 제7차 이사회 의결사항)

6.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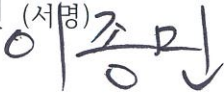
조선영 의장은 이상과 같이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2시 40분 폐회를 선언하다.


간인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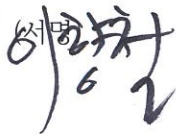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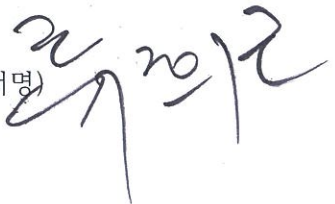
이사장 조 선 영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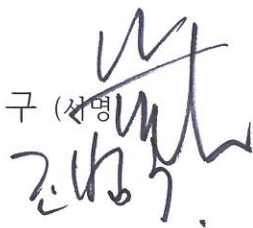
이 사 이 종 수 (서명) 이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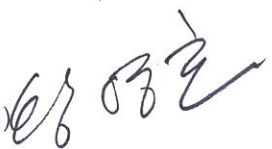
이 사 이 종 민 (서명) 이종민 

이 사 배 일 환 (서명) 

이 사 이 향 철 (서명) 




이 사 류 희 근 (서명) 

이 사 조 범 구 (서명) 

감 사 왕 영 호 (서명) 

감 사 신 혜 성 (서명) 불참

2026. 4. 22.

간인			
----	---	---	---

광운대학교 2025회계연도 고정자산 변동(안)

■ 기계기구

구분		전기이월 장부가액 (원)	폐기 및 취득내역				기말잔액 장부가액 (원)	비고
			물품명	대(점)	장부가액 (원)	폐기 잔존가액 (원)		
기계 기구	등록금 회계	22,603,985,240	청소기 외	1,817	-2,154,117,181	628,657	23,675,106,693	폐기
			모니터 외	1,157	3,225,238,634			취득
	비등록금 회계	12,870,082,872	프린터 외	186	-313,700,904		12,960,538,288	폐기
			향온향습기 외	92	404,156,320			취득
합계		35,474,068,112				36,635,644,981		

■ 집기비품

구분		전기이월 장부가액 (원)	폐기 및 취득내역				기말잔액 장부가액 (원)	비고
			물품명	대(점)	장부가액 (원)	폐기 잔존가액 (원)		
집기 비품	등록금 회계	6,315,520,316	의자 외	2,803	-470,423,250	519,750	6,118,501,340	폐기
			컴퓨터책상 외	1,320	273,404,274			취득
	비등록금 회계	2,537,414,736	의자 외	562	-61,235,581		2,597,499,935	폐기
			테이블 외	264	121,320,780			취득
소계		8,852,935,052				8,716,001,275		

간인			
----	---	---	---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수급 계획(안)

□ 2026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일반채용

가. 일반채용 일반전임(정년트랙): 5명

소속	인원 (명)	분야 및 우선순위	비고
컴퓨터정보공학부	1	컴퓨터공학 전분야 (아키텍처/반도체설계/임베디드시스템)	
소프트웨어학부	1	인공지능 전분야	
로봇학부	1	피지컬 AI 또는 로봇 전분야	
화학공학과	1	이동현상 분야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	회계 분야	
합 계	5		

나. 일반채용 특별전임교원(비정년트랙): 1명

소속	인원 (명)	분야 및 우선순위	비고
국제학부	1	국제정치 분야(동북아시아 지역 관련 연구실적 보유자, 영어강의 가능자 우대)	

다. 일반채용 일정(안): 생략

라. 임용 예정 일자: 2026년 9월 1일




□ 2027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특별채용

가. 일반전임(정년트랙) : 5명

소속	인원(명)	비고
전자정보공과대학	5	
인공지능융합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정책법학대학		
경영대학		
합 계	5	

나. 특별채용 일정(안): 생략

다. 임용 예정 일자: 2027년 3월 1일

간인			
----	---	---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결과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결과

구분	주요 내용	심의결과	비고
제1조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부결	재검토 요청
제3조, 제65조, 제98조, [별표 1] 및 부칙	2028학년도 입학정원, 국제교육원 폐지	가결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3조(학과(학부) 및 전공의 편제와 입학정원) ① 각 대학의 학과(학부) 및 전공의 편제와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p> <p>② 각 대학의 모집단위 편제를 학과(학부) 및 전공으로 모집한다. 학부로 모집할 경우 [별표 1]과 같이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p> <p>제65조(학위수여) 학칙 제49조와 같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 졸업 사정에서 통과된 자는 [별표 1]의 수여학위 중</p>	<p>제3조(학과(학부) 및 전공의 편제와 입학정원) ① - - - - - - - - - - - - [별표 1] - - - .</p> <p>② - - - - - - - - - - - . - - - - - [별표 1] - - - - - - - .</p> <p>제65조(학위수여) - [별표 1] - - - - -</p>	

간인			
----	---	---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류에 따라 [별표 3]의 학위를 수여한다.</p> <p>1.~10. (생 략)</p> <p>제98조(부속교육기관)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교육기관을 둔다.</p> <p>1. (생 략)</p> <p>2. <u>국제교육원</u></p>	<p>-----</p> <p>-----</p> <p>1.~10. (현행과 같음)</p> <p>제98조(부속교육기관)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u>부 칙 <2026. 4. 22.></u></p> <p><u>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u></p>	<p>·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폐지</p>

※ [별표 1] 생략

간인			
----	---	---	---

현행	개정안 (원안)	수정안
<p>④ <u>부속(부설)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광운영상방송센터, 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 교수학습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성인학습가치창출센터, KW-IPP공동훈련센터, 인권·성평등상담실, 학생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u></p>	<p>④ <u>부설연구기관, 공간혁신본부, 발전기금본부,</u> ----- ----- ----- ----- ----- KW-IPP공동훈련센터, 한국어교육센터, 감사실, <u>홍보기획실,</u> ----- ----- 5급 ----- ----- -----</p>	<p>④ <u>부속(부설)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공간혁신본부, 발전기금본부,</u> ----- ----- ----- ----- ----- KW-IPP공동훈련센터, 한국어교육센터, 감사실, <u>홍보기획실,</u> ----- ----- 5급 ----- ----- -----</p>

간인			
----	---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의5(기간제교원) ① (생략)</p> <p>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제46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p> <p>③ (생략)</p> <p>〈신설〉</p> <p>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39조의5(기간제교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2항에서 정한 범위의 규정을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4항에 따른다.</p> <p>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 ----- ----- ----- ----- ----- ----- ----- -----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 ----- ----- -----.</p>

간인			
----	---	---	---

현행	개정안
<p>②·③ (생략)</p> <p>제87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대외국제처, 총무처, 관리처, 정보통신처 및 <u>총장 직속 기구</u>를 둔다.</p> <p>②·③ (생략)</p> <p>④ 제1항의 각 처에는 사업단, 센터, 팀 및 실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u>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팀장 및 실장은 5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u> 보한다. <단서 신설></p> <p>⑤ (생략)</p> <p><신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7조(하부조직) ① ----- ----- <u>국제처</u>----- ----- <u>총장·부총장 직속기구</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처 및 총장·부총장 직속기구</u>에는 <u>사업단, 본부</u>----- ----- <u>본부장·센터장 및 실장</u>----- 5급 ----- <u>팀장</u>----- ----- . <u>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 본부장, 센터장 및 실장을 비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간인			
----	---	---	---

「광운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수정의결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원 안)	수 정 안
제3조(임기) 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 1년----- 중임-----.	제3조(임기) ①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 다.

간인			
----	---	---	---